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71

발의연월일: 2021. 1. 27.

발 의 자:김한정・문정복・양경숙

기동민・맹성규・전혜숙

황운하 • 이성만 • 김승원

최종윤 · 남인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해지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상담을 통한 대면 방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실정임.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3호 중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를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
항) ① (생 략)	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	
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3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u>보험계</u>	<u>보험계</u>
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
	<u> 정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